

KIPEC BRIEFS

미국의회 주요동향



목차

1. 의회 일정 및 소식	2
2. 연방의회 주요 입법 동향	4
3. 미국 무역법 제122조 적용 논란 및 정책적 쟁점(CRS 리포트 요지) ..	5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5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음영 표시 : 의회 회의

□ 4월 주요 정치 소식

버지니아주 선거구 재조정 승인과 미 하원 권력 구도 변화 전망

지난 4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실시된 주민투표를 통해 연방 하원 선거구 재조정안이 승인되었다. 해당 조치는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것으로, 기존 11석 중 6석을 차지하고 있던 민주당이 향후 최대 10석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구가 설계된 점에서 단기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는 10곳,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는 9곳으로 집계되어 민주당이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다만 이러한 선거구 구조가 실제 선거 결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후보 경쟁력, 지역별 정치 지형, 선거 환경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공화당이 텍사스 등에서 추진한 선거구 재편에 대한 대응 성격を 가지며, 미국 전반에서 선거구 재조정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에서 민주당 주도의 재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양당 간 경쟁은 일정 부분 균형 상태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나,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현재 연방 하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 217석, 민주당 213석으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부 선거구 변화만으로도 의회 권력 구조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있다.

공화당 역시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며, 특히 플로리다주에서 추가적인 선거구 재조정이 추진될 경우 공화당이 다시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버지니아 주 내부적으로는 아비게일 스펀버거 주지사가 초기의 신중한 입장에서 재조정안 지지로 입장을 조정한 점이 주목되며, 이에 대해 공화당은 정책 일관성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주민투표 결과에서도 도시 지역, 고소득층, 흑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찬성이 우세한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반대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등 지역 간 정치적 분극화가 확인된다.

종합적으로 이번 버지니아 선거구 재조정은 민주당이 단기적으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한 사례로 평가되나, 연방대법원의 투표권법 관련 판결, 플로리다 등 타 주의 추가 조정 가능성, 각 주의 정치 환경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중장기적 판세는 여전히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와 같이 하원 의석 격차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일부 선거구 변화가 전체 의회 권력 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선거구 재조정을 둘러싼 경쟁은 미국 정치 지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구 재조정과 관련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은 2025년 11월 발간된 KIPEC 현안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TV토론 동향 및 주요 쟁점 분석

지난 4월 2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TV 토론에는 주요 후보 6명이 참여하였으며,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토론은 전반적으로 큰 충돌 없이 이루어졌으며, 특정 후보가 두드러진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도 뚜렷한 선두 후보가 부재한 가운데 경쟁 구도가 유지되고 있어, 선거 판세는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이번 토론에서는 주거비 상승, 생활비 부담, 노숙자 문제 등 캘리포니아의 주요 사회·경제적 현안이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다.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생활비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정책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일부 후보는 부유층 과세 강화 등 재분배 정책을 제시한 반면, 다른 후보들은 개인적 경험이나 행정 경험을

강조하며 정책 신뢰성을 부각하였다. 공화당 후보들은 민주당의 장기 집권에 따른 정책 성과를 비판하며 차별화된 입장을 제시하였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정당 간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민주당 후보들은 비교적 긍정적 또는 중간 수준의 평가를 제시한 반면, 공화당 후보들은 노숙자 문제 등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는 향후 선거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종합적으로 이번 토론은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한 후보 간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으나, 선거 구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준의 전환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선거 결과는 후보 경쟁력, 추가 이슈의 부상, 유권자 동향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의회 주요 입법 동향

법률(안)	심의현황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해외 정보수집 권한 연장 법안 (H.R.8322)	공포 (2026. 4. 18.)	Austin Scott (2026. 4. 16.)	해외 정보수집 권한의 만료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20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으로, 미국 정보기관이 해외에 있는 외국인의 통신을 감청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법적 근거를 유지하고, 감시 권한의 공백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국토안보 종사자 임금 지급 보장 법안 (H.R.8029)	하원통과 (2026. 4. 2.)	Juan Ciscomani (공-애리조나) (2026. 3. 20.)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2026 회계연도 잔여 기간 운영에 필요한 세출 예산을 지원하고, 임시예산안(CR) 종료로 인해 발생한 부분적 셧다운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음. 또한 국경·이민·보안·재난 대응 등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한 예산을 포함하며, 셧다운 기간 동안 영향을 받은 연방 공무원에 대한 소급 임금 지급과 필수 지출에 대한 사후 승인도 주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
2026년 해외 미국 재산 보호 법안 (H.R.7084)	하원통과 (2026. 4. 2.)	August Pfluger (공-텍사스) (2026. 1. 15.)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이 보유한 항만 등 자산을 국유화하거나 수용할 경우, 해당 항만을 이용한 선박의 미국 입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대통령은 대상 항만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의 해외 자산 보호를 위해 해상 기반의 경제적 압박 수단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반도체 수출통제 법안 (MATCH Act) (S.4281)	발의	Pete Ricketts (공-네브래스카) (2026. 4.13.)	반도체 제조 장비와 부품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여 미국의 첨단 기술 우위를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특히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동일한 수준의 수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유도하고, 협력이 미흡할 경우 미국이 독자적으로 추가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보 우려 국가의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보를 차단하고자 함.
수출통제 공소시효 법안 (H.R.8202)	발의	Ryan Mackenzie (공-펜실베이니아) (2026. 4. 6.)	수출통제개혁법(2018)을 개정하여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기 위한 법안

미국 무역법 제122조 적용 논란 및 정책적 쟁점(CRS 리포트 요지)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수입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해당 조항이 실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 최초 사례로, 법적·정책적 측면에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제122조는 국제수지 악화, 달러 가치 급락 방지, 국제수지 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대통령이 일정 기간 동안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국제수지 적자(balance-of-payments deficits)'의 법적 의미와 적용 범위를 둘러싼 해석 문제를 중심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쟁점이 부각된다.

제122조 도입 배경 : 브레턴우즈 체제

제122조의 도입 배경은 전후 국제통화질서인 브레턴우즈 체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4년 주요국들은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에 모여 전후 경제질서를 설계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국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고 미국은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주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 해외에 축적된 달러 규모가 미국의 금 보유량을 초과하면서 달러의 금 태환 유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금 유출 압력이 심화되었고, 달러 가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달러의 금 태환을 중단하는 한편,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부과금을 부과하였다. 해당 조치는 약 127일간 유지되었으며, 이후 주요국 간 환율 조정 합의로 이어졌다.

이후 대통령의 일방적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75년 의회는 무역법 제122조를 제정하여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 동안 15% 범위 내에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고정환율제를 종료하고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브레턴우즈 체제의 사실상 종식을 의미한다.

국제수지 개념 및 구조

국제수지는 한 국가와 세계 간 모든 경제적 거래를 기록하는 지표로, 경상수지와 자본·금융수지로 구성된다. 경상수지는 상품·서비스 교역, 투자소득, 이전소득을 포함하며, 자본·금융수지는 자본 이동과 금융자산 거래를 반영한다. 국제수지는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 기록되므로 전체적으로는 항상 균형을 이룬다.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의 '국제수지 적자'는 단순한 무역적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달러가 과도하게 축적되어 미국의 금 보유 능력 대비 달러 태환 부담이 증가하는 상태를 의미하였다. 이는 외환시장 개입 필요성과 달러 평가절하 압력으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에는 환율이 자동 조정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 종합적인 국제수지 개념의 정책적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고, 현재는 경상수지 및 자본·금융수지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법적 분쟁 및 해석 쟁점

본 사안의 핵심은 무역적자를 무역법 제122조상 '국제수지 적자'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적 쟁점에 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무역적자에 대응한 전면적 관세 부과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해당 조치는 제122조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특히 법원은 무역적자를 국제수지 적자의 구성 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항소 과정에서 무역적자와 국제수지 적자는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사안으로, 제122조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제122조 적용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채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해당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다. 다만 일부 반대의견에서는 단순한 상품 무역적자만으로는 제122조가 요구하는 '근본적인 국제수지 문제'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편, 제122조의 적용 가능성을 둘러싸고는 상반된 해석이 존재한다. 찬성 견해는 국제수지 적자를 포괄적으로 해석할 경우 무역적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반대 견해는 제정 당시의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고려할 때 국제수지 적자는 환율 및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된 문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역적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본다.

또한 제122조 조문에서 '국제수지'와 '무역수지'가 별도로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입법 과정에서도 두 개념이 구별된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입법자가 이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합하면, 무역적자를 제122조 적용 대상인 국제수지 적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는 향후 사법적 해석과 정책 판단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핵심 쟁점으로 평가된다.

출처: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3199?hl=IF13199&s=2&r=1>

*본 보고서는 2026년 4월 9일 CRS가 발간한 Section 122 of the Trade Act of 1974 (총3페이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발행일 2026년 4월 24일	발행처 한미의회교류센터
『KIPEC BRIEFS』는 한미의회교류센터가 고객을 대상으로 월 1회 발행하는 미국 의회 입법 및 현지 소식입니다.	

KIPEC is registered under FARA. This material is distributed by the Korea Inter-Parliamentary Exchange Center (KIPEC) on behalf of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dditional information is on file with the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C.